
- 보통의 삶, 당연한 일상을 위한 -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

2026. 9.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 추진 배경 및 경과 1

1. 추진 배경 / 1
2. 주요 현황 및 전망 / 2
3. 그간의 성과 / 4
4. 한계 및 개선 필요 사항 / 7

II . 추진 방향 9

III . 추진 과제 10

1.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 10
2.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 16
3. 지역사회 중심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24

IV . 기대효과(5년 후 달라지는 점) 28

I. 추진 배경 및 경과

1 추진 배경

◆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으로 가족 전체의 삶이 위협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장애인)은 인지·의사소통의 제약과 도전행동(자·타해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서 지속적 지원** 필요

* ('23) 27.2만명, 전체 장애인의 10.3% → ('24) 28.1만명, 10.7% → ('25) 28.8만명, 11.0%

** 타 장애 대비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비율이 낮음(발달 26.4%, 전체장애인 64.8%)

-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으로 인해 보호자가 경제활동 포기하거나(46.2%),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등(29.6%) 가족 전체의 삶이 위협*

* 지난 4년간('20~'23) 확인된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는 최소 25건('25 연구)

- 특히, 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성인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우려 심화

* 전체 발달장애인 28.8만명 중 성인 20만(69.5%), 아동 7만(24.4%), 노인 1.7만(6.0%) ('25)

◆ 발달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국가의 실질적 책임으로 전환

- 그간 「발달장애인법」을 제정('14.5월)하면서, 사회참여 촉진과 권리 보호를 목표로 각종 돌봄지원 확대 및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

- 법 시행 10년 경과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삶의 여건과 사회참여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 필요

- 특히, 국정과제⁷⁹⁻¹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는 개인과 가족의 어려움을 국가의 실질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계기

- 국정과제 이행계획 마련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온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전 영역의 두텁고 촘촘한 지원 필요

◆ 국정과제 79 :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보장

-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을 1.2만명에서 3만명까지 확대
- 최종증 대상 통합돌봄 지원 확대, 서비스 단가를 주간활동 단가의 200%까지 단계적 인상 등 최종증 지원 내실화

2 주요 현황 및 전망

◆ 장애 유형 중 유일하게 증가, 수명 격차는 여전

- (장애인 규모)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262.8만 명('25년말)으로 전체 인구의 5.1%, '22년 이후 감소 추세

* ('22) 264.4만 명 → ('23) 263.3만 명 → ('24) 263.1만 명 → ('25) 262.8만 명

-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111.4만 명), 청각장애(44.9만 명), 시각장애(24.5만 명), 지적장애(23.7만 명), 자폐성장애(5.2만 명) 등 총 15가지로 구성

< 등록장애인 유형별 현황 >

('25.12월말, 천명, %)

구분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발달장애		정신
	지체	청각	시각	뇌병변	언어	안면	신장	장·요루	간	호흡기	뇌전증	심장	지적	자폐성	정신
인원	1,114	449	245	233	22	3	115	18	16	10	7	5	237	52	103
(비율)	(42.4)	(17.1)	(9.3)	(8.9)	(0.8)	(0.1)	(4.4)	(0.7)	(0.6)	(0.4)	(0.3)	(0.2)	(9.0)	(2.0)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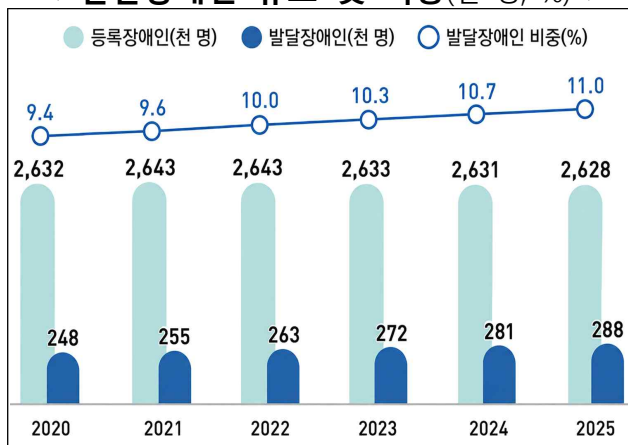
- (발달장애) 지적능력이 부족한 지적장애와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능력에 제약이 있는 자폐성장애를 말하며, 모두 심한장애에 해당

* 15개 장애 유형 중 유일하게 모두 '심한 장애'이며, 심한 장애인 중 30%가 발달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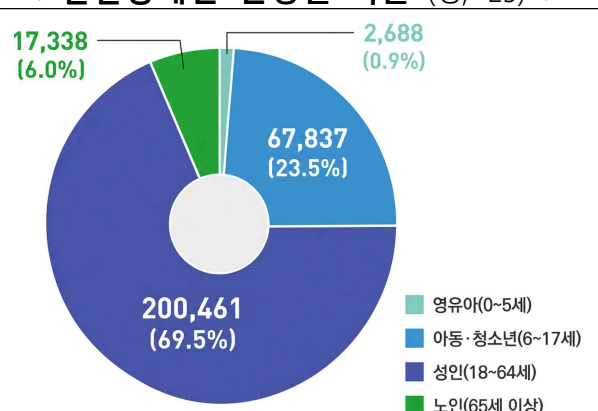
- (규모) 발달장애인 수는 28.8만 명('25년말, 전체 장애인의 11%)로 지속 증가 추세이며, '20년 24.8만 명에서 5년간 16.3% 증가

* ('20) 24.8만명, 9.4% → ('22) 26.3만명, 10.0% → ('24) 28.1만명, 10.7%

< 발달장애인 규모 및 비중(천 명, %) >



< 발달장애인 연령별 비율(명, '25) >



- 발달장애인의 지난 5년간 연평균 증가율(약 3.1%) 고려 시 '30년에는 **33.5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

* 전체 등록장애인 수가 '25년 수준 유지 가정 시 전체 대비 **12.8% 비중 차지**

- (연령별) 전체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인은 아동·청소년, 성인의 비율이 높아 65세 미만의 비율이 94.0% 차지

* 전체 장애인 65세 이상 비율 : ('20) 49.9% → ('22) 52.7% → ('24) 55.3% → ('25) **56.9%**

< 연령별 발달장애인 현황 >

(25.12월말, 명, %)

구 분	합 계		영유아(0~5세)		아동·청소년(6~17세)		성인(18~64세)		노인(65세 이상)	
전체 장애인	2,627,761 (100%)		6,757 (0.3)		85,337 (3.2)		1,039,532 (39.6)		1,496,135 (56.9)	
발달 장애인	288,324 (100%)		2,688 (0.9)		67,837 (23.5)		200,461 (69.5)		17,338 (6.0)	
	지적	자폐	지적	자폐	지적	자폐	지적	자폐	지적	자폐
	236,635 (82.1)	51,689 (17.9)	962 (35.8)	1,726 (64.2)	38,283 (56.4)	29,554 (43.6)	180,058 (89.8)	20,403 (10.2)	17,332 (100.0)	6 (0.0)

- (수명) 발달장애인 사망 시 평균연령은 57.2세로 주요 국가*에 비해 10년 정도 차이, 장애인 전체 평균 연령 78.3세와 21.1년 격차

* 미국 66세, 호주 67세, 영국 71.7세(남성), 69.6세(여성)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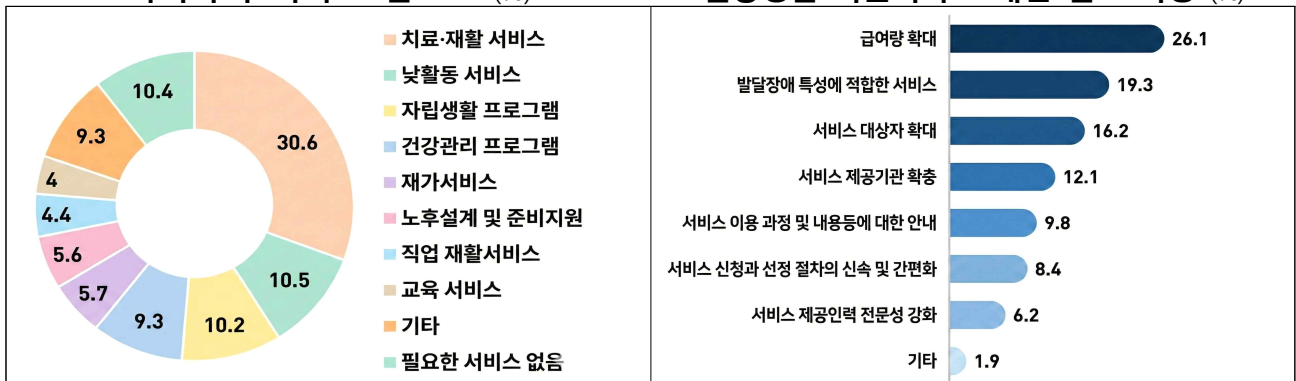
- (욕구 및 필요도) 발달장애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사회 서비스는 '치료·재활'(30.6%) '낮활동'(10.5%), '자립생활'(10.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에 대해 '급여량 확대'(26.1%),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19.3%)가 필요하다고 응답

* 장애인 활동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아동양육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주간보호 등

< 지역사회 서비스 필요도 (%) >

<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선 필요 사항 (%) >



* 2024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그간의 성과

- **(돌봄체계 구축)** 발달장애인법 제정('14.5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18.9월),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22.11월) 수립
 -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지속 증가*하여 '26년 기준 약 4,880억원
 - * 전체 예산 규모(복지부 소관): ('15) 40억원 → ('26) 4,880억원(약 122배)
 - 발달장애인 전담 서비스 전달체계로 중앙·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구축·운영(중앙 1개소, 지역 17개소, '16~)
- **(지역사회 기반)**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지역사회 기반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을 지속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의 낮 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 * (주간활동) '20년 4,000명 → '26년 15,000명
 - (방과후활동) '20년 7,000명 → '26년 11,500명
 - 발달장애 조기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비 지원(최대 1회 20~40만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연 1,200시간) 등 아동기 지원 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훈련센터(19개소)를 통한 직업훈련* 및 장애인일자리** 제공,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등 일자리 지원
 -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취업관련 과정 수료생 1,322명 ('25년)
 -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직무 1,327명 ('26년)
- **(최중증)** 자·타해 등 도전행동이 심하여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24.6.~)
 - * 24시간 개별 1:1 지원(340명), 주간 개별 1:1 지원(500명), 주간 그룹 1:1 지원(1,500명)

-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24시간까지 돌봄을 제공하여 이용자 및 보호자의 높은 만족도*

* ('25)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보호자 평균 만족도 93.4점 (이용자, 96.1점)

- 보호자 입원, 경조사 등 돌봄 공백 발생 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노력('23~)

□ **(부모지원)** 보호자 역량강화 및 소진예방을 위한 다양한 부모교육 및 휴식 프로그램 운영

- 부모교육(1.5만명), 가족휴식, 부모상담 지원(1.5만명)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 기능 유지 및 스트레스 완화 도모

□ **(자립지원)** 발달장애인의 미래와 가족 사후 대비를 위해 공공후견, 재산관리 지원 등 자립 지원 기반 마련

- 의사결정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후견('26. 1.5천명), 재산관리서비스*('26. 450명) 제공

* 법률 개정을 통해 '25.10월부터 본사업화

- 주택·소득·일자리·활동지원·건강검진 등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실시('26.6월 발달장애인 522명)

< 발달장애인 지원 현황 >

	영유아	학령기	성인기	부모·가족
일상생활	장애아 무상보육	특수학교·학급 방과후 활동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발달재활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부모교육 부모상담 가족휴식 긴급돌봄
일자리 및 자립지원		-	직업훈련, 일자리 지원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공후견지원 재산관리서비스	
소득보장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전달체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지원계획			

4

<국정과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란?

□ (돌봄의 의미) '서비스 제공' 중심에서 '주체적 삶 지원' 중심으로 확장

- (기존) 가족, 돌봄 종사자 등의 보살핌을 통해 개인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

⇒ (확장) 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지역사회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자립적·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적인 개념

- 권리 기반의 사회참여와 자기결정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교육, 일 자리, 주거 등 자립 지원의 영역까지 돌봄의 의미를 확장

구분	기존의 돌봄	확장된 돌봄
관점	■ 수혜적 관점	■ 권리 기반 관점
대상	■ 보호의 대상	■ 삶의 주체
핵심 가치	■ 신체적 안전, 정서적 보호	■ 자립, 사회적 통합, 자기결정권, 사회 참여
지원 방식	■ 주간·방과후활동, 긴급돌봄 등 돌봄 서비스 제공 중심	■ 주거·일자리 연계, 의사결정·재산 관리 지원 등 삶 설계 지원 확대

□ (국가책임제) 돌봄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서 '국가와 사회'로 전환

- (공적 책임 강화) 오롯이 부모와 가족이 짊어져야 했던 발달장애인 돌봄의 고통과 부담을 국가가 실질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지 선포
- (생애주기별 통합지원) 기존의 서비스를 촘촘하게 연계하여 발달장애인의 탄생부터 노후까지 끊김 없이 국가가 지원함을 의미

5 한계 및 개선 필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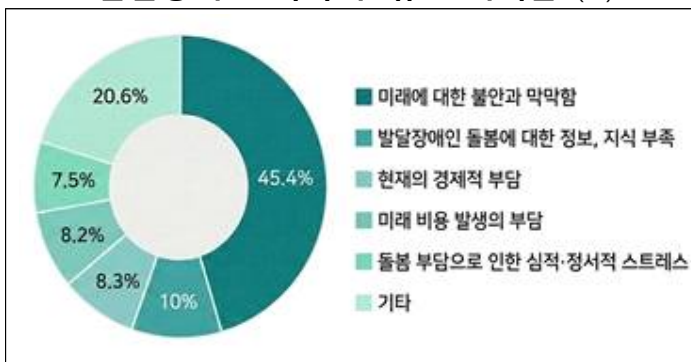
□ (서비스 확대) 돌봄서비스 확충 및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확대

-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나, 증가하는 발달장애인 규모, 현장의 대기인원 등을 고려하여 수요에 맞는 급여량 확대 필요
- 발달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다양화 요청

□ (자립지원) 부모 사후 대비, 자립을 위한 미래 설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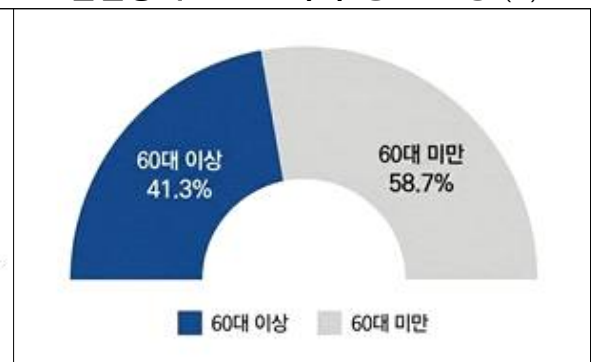
- 보호자 부재 또는 사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일자리 등 지속 가능한 경제적 기반 필요
-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리보장 및 의사결정 관점의 지원체계 필요

< 발달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 (%) >



*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보사연, '24)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평균 연령 (%) >



*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수조사('24)

□ (지원체계)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합적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서비스 간 연계 미흡, 정보 부족으로 개별 서비스를 일일이 찾아가는 방식
- 개인별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 확충과 제공인력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 필요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원하는 삶

생애주기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바람	제공서비스	강화필요방향
영유아	우리 아이가 장애가 있는가? (조기발견 · 진단 및 부모의 무관심) 발달장애 지원서비스는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발달장애인 아이 어떻게 키워야 할까? 언어·의사소통 지원은 어떻게?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이상 정밀검사) 개인별 지원 계획 부모교육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장애아 보육료 지원 특수교육 지원 언어발달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영유아 건강검진 연계 •아동 중심 개인별 지원계획 강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부모교육 대상 확대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돌보미 지원 확대 •자조모임 활성화 •서비스량 증가, 본인부담 완화
성인	낮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도전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은 어떻게 돌볼까?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나? 부모와 가족이 돌봄으로 인한 소진시 어떻게 할까?	방과후활동서비스(학령기) 주간활동서비스(성인) 직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등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최중증 포함) 부모상담, 가족휴식, 긴급돌봄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 대상 확대 •중복장애 지원 •주간활동 서비스 •일자리 사업 확대 •대상 확대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 •서비스 단가 인상 •제공기관 추가 확대 (現)긴돌 :17개 시도 34개소 (現)최중증 긴돌 2개소(시범) •서비스 대상 확대 •시도 가족지원센터와 서비스 연계
자립 및 고령 등	우리 아이가 지역사회 안에서 혼자 살 수 있을까?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공공후견제도 재산관리서비스 주거생활서비스 시범 운영	•공공후견 교육 및 홍보 강화 •재산관리 지원대상 확대 •주거생활서비스
안정적 서비스 공급 등	발달장애인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데?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돌봄 기술 부족 이용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	전문수당 신설 보험 신설 교육과정 신설 개인별 지원 계획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센터	•전문수당 인상 •보험 보장성 강화 •역량 강화 교육 확대 •멘토링, 자조모임 •센터 기능 고도화 및 역량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포함) •전문사례관리사 배치

II. 추진 방향

비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일상을 누리는 사회						
목표	◆ 수요에 맞는 충분한 돌봄으로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 발달장애인이 자립하여 살 수 있는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 당사자 목소리가 존중받는 실질적 권익보호 실현						
추진 전략 및 과제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43 806 662 1187"> ①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td><td data-bbox="678 806 1412 1187"> ① (영유아) 조기진단 및 조기 지원 강화 ②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확대 및 특수교육 강화 ③ (청·장년) 의미있는 일상생활 보장 ④ (고령) 건강관리 및 노후 생활 안정 지원 </td></tr> <tr> <td data-bbox="343 1243 662 1624"> ②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td><td data-bbox="678 1243 1412 1624"> ① (자립)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체계 구축 ② (일자리)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로 지원 강화 ③ (권리) 의사결정 지원 및 권리보호 강화 ④ (여가) 여가 활동을 위한 공적서비스 확대 </td></tr> <tr> <td data-bbox="343 1680 662 1960"> ③ 지역사회 중심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td><td data-bbox="678 1680 1412 1960"> ① (전달체계) 개인별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고도화 ② (처우개선) 돌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처우개선 ③ (부모·가족) 가족의 정서적 지원 강화 </td></tr> </table>	①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① (영유아) 조기진단 및 조기 지원 강화 ②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확대 및 특수교육 강화 ③ (청·장년) 의미있는 일상생활 보장 ④ (고령) 건강관리 및 노후 생활 안정 지원	②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① (자립)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체계 구축 ② (일자리)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로 지원 강화 ③ (권리) 의사결정 지원 및 권리보호 강화 ④ (여가) 여가 활동을 위한 공적서비스 확대	③ 지역사회 중심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① (전달체계) 개인별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고도화 ② (처우개선) 돌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처우개선 ③ (부모·가족) 가족의 정서적 지원 강화
①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① (영유아) 조기진단 및 조기 지원 강화 ②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확대 및 특수교육 강화 ③ (청·장년) 의미있는 일상생활 보장 ④ (고령) 건강관리 및 노후 생활 안정 지원						
②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① (자립)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체계 구축 ② (일자리)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로 지원 강화 ③ (권리) 의사결정 지원 및 권리보호 강화 ④ (여가) 여가 활동을 위한 공적서비스 확대						
③ 지역사회 중심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① (전달체계) 개인별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고도화 ② (처우개선) 돌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처우개선 ③ (부모·가족) 가족의 정서적 지원 강화						

III. 추진 과제

1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 ◆ 생애주기별 서비스 확대를 통한 돌봄 공백 최소화
- ◆ 최종증, 중복장애 등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① [영유아] 조기진단 및 조기 지원 강화

- **(조기 개입)**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영유아 검진 3차~8차) 결과에 따른 발달 정밀검사 가능 기관 지속 확대 및 홍보 강화
 -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에게 지원체계(지역장애아동·발달지원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정보 안내(보건소, 건보공단) 등 지역 내 조기 개입 지원 홍보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통해 발달 지연 또는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 대상 조기 개입 서비스**, 부모 상담 및 양육 지원***
 - * '26년 신규 설치, 10개소 운영 중('26.8월 기준)
 - ** 발달 문제를 조기에 발견·완화하고 2차 장애 발생을 예방
 - *** 영유아기의 주요 발달 과업과 양육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양육지원)** 중증장애아동 가족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의 서비스 이용시간 단계적 확대**
 - * 이용자 5.6천명 중 발달장애인 3.6천명(약 64%)
 - ** ('26) 연 1,200시간 → ('27) 연 1,320시간(정부안)
 -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시간당 영아 2천원, 유아 1천원) 등을 신설하여 고난도 돌봄취약 가정 지원 강화
- **(발달재활)** 성장기 장애아동의 의사소통, 운동 등 기능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통한 적기 서비스 제공
 - *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규모 : ('26) 11만명 → ('27, 정부안) 11.6만명

- **(재활치료)** 장애아동의 적기 재활치료를 위해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 및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확충** 추진

* ('26) 시범운영 39개소 → ('30) 지역 여건 고려, 권역별 지정 확대

** ('26) 10개소 → ('27, 정부안) 13개소(전북·경남·경북 권역 추가)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시범사업(2기, '24.3~'26.12.) 성과 등을 토대로 수가 개선* 및 본사업 전환('27) 여부 검토

* 재활치료료Ⅲ 가산 확대(現 6세 미만 30% → 改 3세 미만 40~지역50%), 기간 제한 없는 집중치료 가능 연령 확대(現 6세 미만 → 改 9세 미만) 등

- **(장애아 보육^{교육부})** 장애영유아 돌봄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확충과 연계하여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지속 확대

*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수(누적) : ('25) 2,008개소 → ('27, 정부안) 2,088개소

-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장애영유아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영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현장 지원자료 개발·보급

* ('25)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현장 지원 자료 1종 → (~'30) 장애영유아 현장 지원 자료 6종

②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확대 및 특수교육 강화

- **(방과후돌봄)** 6~18세 발달장애학생의 하교 후 안전하고 의미있는 시간 보장을 위해 방과후돌봄서비스 대상 인원 확대 내실화

* 대상인원 : ('26) 1.15만명 → ('27, 정부안) 1.3만명

- 방과후돌봄서비스 내 1인 집중 지원 신설('26.4월~)을 통해 도전행동 또는 중복장애 등으로 1:1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방학 중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계절학기 운영 추진

□ **(특수교육^{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추세를 고려, '30년까지 특수학교 20개교 설립, 매년 특수학급 600개 이상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노력 및 소규모·단일과정 등 특수학교 다양화 추진

○ **(특수교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연차적으로 특수교사 확충

* 특수교사 증원 : ('25) 520명 → ('26) 600명 → ('27) 873명

□ **(행동지원^{교육부})** 행동중재가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추진('26, 150명) 및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자료* 개발·보급

* ('25) 행동중재 지원 가이드북 2종 → (~'30) 4종

③ [청·장년] 의미있는 일상생활 보장

□ **(낮 활동)**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 확대('26년1.5→'30년3만명)를 통해 더 많은 성인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낮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 지원

* ('26) 1.5만명 → ('27, 정부안) 2만명

○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욕구 및 근로 여부에 따라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서비스 단축형(월 88시간, 일 4시간) 신설 검토('27~)

* 기본형: 월 132시간(일 6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일 8시간)

현행(AS-IS)		개선안(TO-BE)	
기본형(132시간), 확장형(176시간)		단축형(88시간) 추가	
기존 이용자	근로 참여자	기존 이용자	근로 참여자
주간활동서비스만 이용	보호작업장(일 4시간) 등 단시간 근로 후 서비스 공백	주간활동 서비스만 이용	근로+서비스(단축형) 병행 근로가 가능한 기존 이용자의 노동시장 진입 가능

- 디지털화된 사회 서비스 이용* 등 실생활에 필요한 기술 훈련 프로그램 고도화하여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자립 지원

* 키오스크 주문, ATM기, 스마트폰, AI 서비스 이용 등

- **(최중증)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개인별 욕구 및 환경 등을 고려한 통합돌봄서비스 보장성 확대

- **(대상자)** 지원 인원을 '30년까지 지속 확대하여 더 많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맞춤 돌봄 강화

* ('26) 2,340명 → ('27, 정부안) 2,760명

- **(24시간 돌봄)** 가정 내 보호체계 등이 부족하여 야간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 우선 확대

* (제공기관) '26년 34개소 → ('27, 정부안) 40개소

- **(서비스 단가)** 주간 그룹 1:1 지원(바우처)의 서비스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제공기관 참여 유인 및 서비스 질 제고

*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 인상(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180%('26) → '200%('30))

- **(주거지원)** LH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공간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복지부의 **24시간 1:1 돌봄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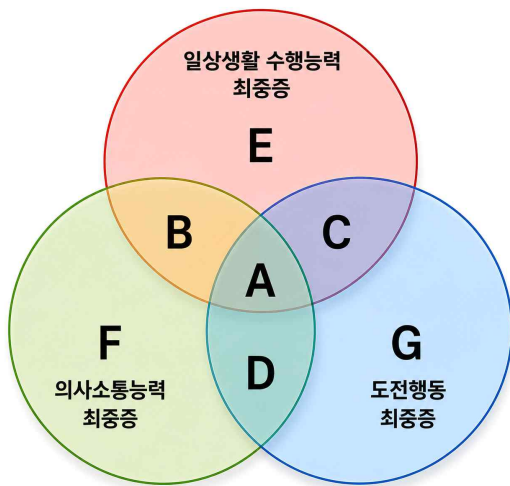
* LH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등)을 각 지자체와의 임차계약 방식으로 제공

- **(품질관리)** 최중증 통합돌봄의 기관운영, 인권보장 및 위기관리 등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매년) 및 품질평가(3년) 체계 마련**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품질관리 연구('25.12.~'26.6.), 품질평가 도입('28)

- **(중복장애)** 뇌병변, 지체(와상), 시·청각 등 중복장애를 가진 최중증 발달 장애인 지원을 위한 유형 신설 및 지원방안 마련 검토

< 최중증 발달장애인 정책 대상 규모 (18세~64세) >



현재
도전행동이 최중증*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 A+C+D+G (4,813명)



개선안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중복장애인* 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 * B+E (8,903명) ** 장기적으로 F까지 단계적 확대 검토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개발 심화연구(김미옥, '24)

- **(긴급돌봄)**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과 최중증 긴급돌봄 통합운영 추진('27)

* ('26) 36개소(최중증 2개소 포함) → ('27, 정부안) 39개소(최중증 5개소 포함)

- 집중 행동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서비스 본사업 전환 검토('27~)
- 체계적인 긴급돌봄서비스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26~)

④ [고령] 건강관리 및 노후 생활 안정 지원

- **(조기노화)** 발달장애인의 조기노화 특성을 고려한 고령 발달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돌봄서비스(주간활동서비스 등) 고도화

* 조기노화 특성을 고려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 연구 추진

- **(통합돌봄)**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지원 사업' 추진

* 「통합돌봄지원법」제정되어 통합지원 대상에 복합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을 규정(26.3. 시행)

** (기존) 노인 중심 → (개선) 장애인 등 추가 확대 추진

-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을 적극 발굴·연계하여 분절적 지원이 아닌 장애 특성,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건강관리)**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안전편의 관리비* 확대 검토 및 운영기관 확대**, 시설기준 합리화 등 제도개선 추진

* (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서 중증장애인 건강검진(일반검진, 암검진) 시 수가 추가지원 중 (1인당 83,830원, '26년 기준)

** ('26) 34개소 → ('27, 정부안) 42개소

-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유소견자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연계 체계 강화

- **(활동지원)**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 도래 시에도 활동 지원서비스를 지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7.7월~)

* (장애인활동법 제5조 안)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도래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않을 경우 활동지원 신청자격 부여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심한 장애인** (발달장애인은 모두 심한 장애인에 해당) 전체로 확대(연금액 차등)('27.7월~)

* (장애인연금법상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 종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3급 단일 제외)

** (등급제 폐지)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종전 1~3급)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4~6급)으로 구분

2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 ◆ 부모 사후, 실질적 자립을 위한 주거, 일자리 연계 등 지원체계 확립
- ◆ 취업 기회 확대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강화
- ◆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 지원 및 권익보호 방안 마련

① [자립]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체계 구축

- (자립지원) 자립이 필요한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 일자리, 활동지원 등을 연계하는 자립지원 본사업 추진('27~, '22~'26 시범사업)
 - * ('26.6월) 누적지원자 615명 중 발달장애인 522명(84.9%)
-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27.3월)에 따라 '30년까지 모든 기초 지자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참여 지자체 점진적 확대 검토
- 장애인 학대 및 보호자 고령, 질병, 사망 등 긴급하게 자립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우선하여 자립 지원*
 - *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제26조 긴급 지역사회 자립 지원 규정('27.3월 시행)
-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AI 기반 활동보조 기술* 개발·실증 등 관련 R&D 확대 추진 방안 검토
 - * 세면 및 구강 위생 알람, 복약 알람, 식사·출근 시간 알람 등 자립 장애인이 스스로 일과를 인지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인지보조 도구 등
- LH 등 협력체계 강화 및 수시 협의하여 장애인 주택(매입임대 등) 공급 추진

< 참고 :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

- (사업기간) '22년~'26년
- (지원대상) 자립을 희망하는 ▲장기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학대피해쉼터 장애인과 자립이 필요*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
 - * 보호자의 장기 부재(사망, 질병 등), 위기가구, 학대 피해, 입소 대기 등
- (참여지역) '22년 10개 → '23년 17개 → '24년 30개 → '25년 35개 → '26년 44개*
 - * 광역 10개(인천, 부산, 광주 등), 기초 34개(경주, 서산, 군산, 화순, 안산 등)

□ **(최중증)** 부모 사망 등으로 갈 곳이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및 주거 서비스 확대 추진('27.하~)

-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의 기존 인프라(임대주택 등 주거공간)를 활용하여 주말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

* (현재) 금요일 저녁(오후 8시)부터 주말(토-일)은 원가정 복귀를 서비스 원칙으로 함

□ **(주거지원^{국토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 민간 등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안(공모)하면 LH가 매입약정을 통해 해당주택을 매입하여 운영기관을 통해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

- 보건복지부·지방정부 등과 협업하여 발달장애인 주거수요에 적합한 장애인 자립지원형 특화주택을 공모를 통해 발굴·공급

□ **(거주시설 기능전환)** 중증 외상장애, 의료연계 등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의료 및 돌봄서비스 제공('26~)

- '의료집중형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시범사업 추진

* ('25.8.) 대전 로템 선정, ('26.7.) 서울 영락애니아의 집 선정

□ **(개인예산제)** 공급자 위주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에게
재화·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확대 검토

* ('26년) 이용자 921명 중 발달장애인 613명(66.6%) / '26.7월 기준

- 수급 바우처* 급여의 일정액(20% 이내)을 개인예산으로 설정하고 사전에 개별 수립한 이용계획에 따라 본인이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구매

* (대상사업 4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발달재활서비스

□ **(활동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돌봄·활동보조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 대상자 지속 확대('26년 14.0만명 → '27년 정부안 14.9만명)

* 활동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발달장애인은 100,336명(56.7%, '26.5월 기준)

- 중증·발달장애인 등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장애 유형의 연계 활성화를 위해 돌봄난이도에 따른 추가적 인센티브 부여 등 검토

< 참고 :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

- (목적) 최종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활동지원사 연계 강화
- (지원대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 영역 합산 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인 자 등
- (지원인원·금액) 1만명, 시간당 기본급여 외 **3,300원 추가 지원**(‘26년)

② [일자리]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로 지원 강화

- (일할기회 확대^{노동부}) 발달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보 병행
 - 민간·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단계적 상향, 중증장애인 채용시 2배로 인정(더블카운트)하여 채용 적극 확대
 - * 민간(%): (‘19) 3.1 → (‘27) 3.3 → (‘29) 3.5
 - 공공(%): (‘19) 3.4 → (‘22) 3.6 → (‘24) 3.8 → (‘29) 4.0
 - 발달장애 근로자가 다수 근로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 *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26) 192개소 → (‘27, 정부안) 194개소
 - ** 표준사업장 경쟁력·홍보 전문성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신설(‘26년)
- (노동시장 진입 지원^{노동부}) 노동시장 진입을 원하는 발달장애인의 구직의욕 및 역량 제고
 - 발달장애인 인턴십을 통해 일할기회를 제공하여 정규직 취업 가능성 제고
 - * 인턴제를 통한 발달장애인 참여인원 (‘26년) 647명
 - 발달장애 특성(지속·반복 훈련 필요)을 고려한 재직자 직무 및 기초소양(출퇴근 체크, 동료간 의사소통, 직장예절 등) 훈련 확대
 - *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 지원 대상 : (‘26) 400명 → (‘27, 정부안) 720명

- 발달장애인훈련센터(전국 19개) 연계를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훈련을 도입('26년)하여 현장 중심의 직무역량 강화 및 취업 가능성 확대

- (고용안정노동부) 장애로 인해 직무적응·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 단계적 확대('26년 11.7천명 → '27년 정부안 12.2천명)등 고용관리지원

* 이용장애인 대비 발달장애 비율 : ('21년) 58.4% → ('24년) 62.2% → ('25년) 64.0%

- 발달장애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대상으로 '발달장애 특별과정' 교육 운영, 발달장애 지원 전문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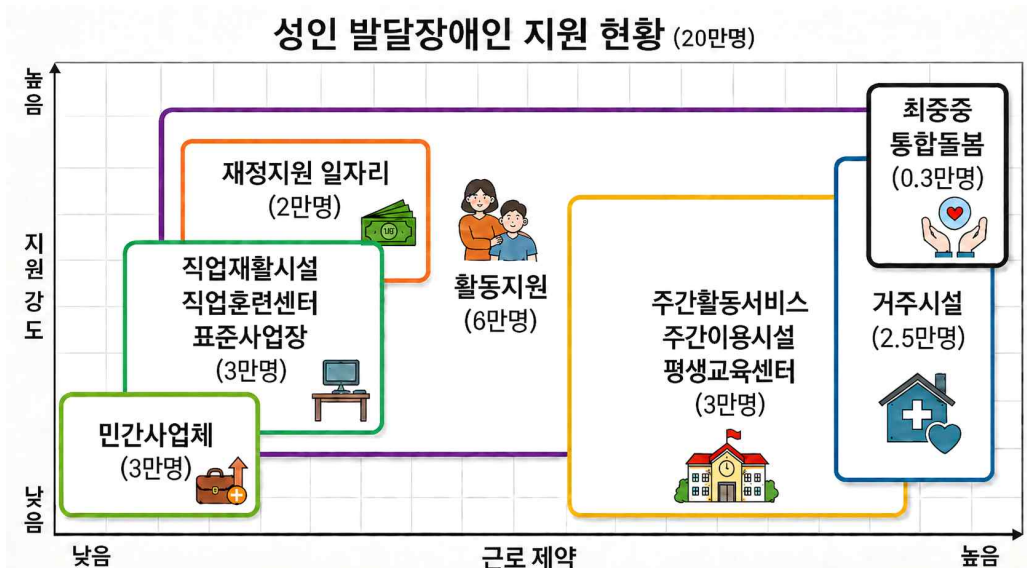
- (공공일자리) 장애인 유형·정도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 개발* 및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확대

* ('26년 시범사업) 진로지도 잡코치, 식물 코디네이터

**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직무 확대 ('26) 1,327명 → ('27, 정부안) 1,427명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직무(특화형) 신설 ('27, 정부안) 500명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내 훈련장애인의 원활한 훈련 참여 지원을 위한 훈련지원비(1인당 월 10만원) 도입 추진('27.하~)



*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은 어린이집, 특수학교·학급, 발달재활서비스,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③ [권리] 의사결정 지원 및 권리보호 강화

- **(공공후견)**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추진

* 공공후견인 및 피후견인 현황('25.12월) : 후견인 1,092명, 피후견인 1,571명

- 공공후견법인을 중심으로 후견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하여 역량있는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

* 당사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지원의사결정(SDM)**에 대한 전문교육 과정 등 운영

** **지원의사결정(Support Decision Making)** : 당사자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조력을 제공

- 공공후견인의 후견 업무 지원 강화, 후견인·피후견인 관리 및 연계 등을 위해 **지역공공후견법인*** 내 전담인력 배치 및 지원 강화('27~)

*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각 15개소씩 30개소

- **(재산관리)** 금전 관리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 서비스(국민연금공단 수탁) 대상자 확대('25년 165명 → '26년 450명)

< 참고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서비스 >

- **(사업개시)** '25년 10월 본사업 전환 (※ '22.5월~'25.9월 시범사업)
- **(추진배경)** 발달장애인의 부모 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신탁 도입 필요
- **(지원대상)** 만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사업내용)**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을 수탁자로 한 신탁계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장기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보호하고, 지출관리를 통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

- **(금융거래지원^{금융위})** 발달장애인의 금융거래(카드 발급, 대출 등)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 자체 장애 유형별 세부 응대 매뉴얼 정비

□ **(학대 대응)** 변호사 배치, 상담·조사 및 교육·홍보 인력 확충, 지역기관 추가 설치 등 장애인권익옹호기관(중앙1개·지방19개) 학대 대응 역량 강화

* 인력 : ('26) 중앙 6인, 지역 5인 → ('27 정부안) 중앙 7인, 지역 6인

○ 피해 장애인(아동)쉼터*의 안정적 운영지원**을 통해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조속한 사회복귀 도모

* 피해장애인쉼터(22개소), 피해장애아동쉼터(12개소) 운영 중('26)

** 아동·노인 쉼터 대비 낮은 인건비(76% 수준) 상향, 쉼터 운영비 현실화, 기능보강 등

□ **(형사·사법지원^{경찰청·법무부})** 수사 과정상 발달장애인의 실질적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 마련 추진 및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활성화

* (주요 내용) 신뢰관계인 동석 의무화, 신뢰관계인 부재 시 대체 인력 제공 방안 마련, 발달장애인 전담 수사관 역할 구체화 등

○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대상 사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경찰단계에서의 맞춤형 사법적 권리보장 이행방안 마련 제고

* (연구용역) 수사과정상 조력 필요 대상자 확인방안에 대한 연구-성신여대('26.7.~'26.11.)

○ 발달장애인 피의자의 장애 정도, 가정 내 보호력 등 고려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위해 발달센터 등 활용 맞춤형 교육자원* 연계 제공

*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별 맞춤형 재범방지 지원 사례 등 참조

□ **(인식 제고)** 발달장애에 대한 편견 예방 및 차별 방지를 위해 발달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등 추진

○ 공공시설 이용 시 발달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공항, 지하철, 마트 등 배려가 필요한 공간을 중심으로 심볼* 착용 도입

* 쉽게 착용 및 인지 가능한 목걸이, 뱃지, 키링 등

< 참고 : 해바라기 캠페인(Hidden Disabilities Sunflower) >

- **(현황)** 영국 개트워 공항에서 시작('16), 전 세계 200개 이상 공항 및 영국의 철도, 대형마트, 박물관에서 도입 및 활용
- **(배경)** 자폐증, 만성 통증, 치매 등 **즉시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승객들이 공항 이용 시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고안
- **(방식)**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해바라기 문양이 그려진 목걸이나 배지를 **자발적으로 착용**하고, 이를 본 공항 및 상점 직원 등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을 인지

< 해바라기 캠페인(해외사례) >



< 비가시적 장애에 대한 표지판(예시) >



4 [여가] 여가 활동을 위한 공적서비스 확대

- **(이동지원^{국토부})** 발달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법 체계 개편 및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 개선 추진

- 단편적·분절적 교통약자 편의 증진에서,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대한 보편적·종합적 이동권 보장으로 개편(「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발의, '26)
-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지속 확대*하고 대기시간('25년 평균 32.4분) 감축을 위해 운영비 지원 확대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편의 개선

* (특별교통수단) '21 86.0% → '22 93.0% → '23 101.4% → '24 103.1% → '25 107.6%

- **(평생교육^{교육부})**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및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학습도시**를 통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25.11.11.)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26년 102개 → '27년 110개(^{국고지원}80→85개))

- (예술·창작 지원 문체부) 신진·예비 장애예술인 '첫 지원'을 통한 지원 사업 진입단계 활동기반 기회 확대('26년 6억원 → '27년 정부안 8억원)
- 장애예술인(단체) 대상 '장애예술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통한 창·제작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26년 74.2억원 → '27년 정부안 105.2억원)
- (문화예술교육 문체부)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을 통한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 제공 및 전문예술활동 참여 기회 확대
 - * 12개 시도, 24개 학교 운영
- (체육활동 지원 문체부) 균등한 스포츠 기회 제공을 위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지원 및 발달장애인 등 대상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제공
 - * (체육관형·종목특화형) '25년 30억원 → '26년 40억원(수중운동실 포함 시 +10억원) / (수영장형) '25년 40억원 → '26년 50억원
 - ** '26년 기준 5세~69세 등록장애인 25,900명 대상 월 11만원 지원
-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통합스포츠단 활동 지원*(5개 종목)으로 발달 장애인의 신체기능 향상과 사회적응 능력 강화 도모
 - * 5개 종목(통합축구·농구·프로어볼·배구·배드민턴), '26년 36개 팀



3 지역사회 중심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지원, 사례관리 등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마련

*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26),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사례관리자 배치 등

◆ 돌봄 인력의 전문 역량 제고 및 안정적 근로 여건 조성

① [전달체계] 개인별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고도화

□ (아동기 지원체계 구축) 장애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등 장애아동 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치('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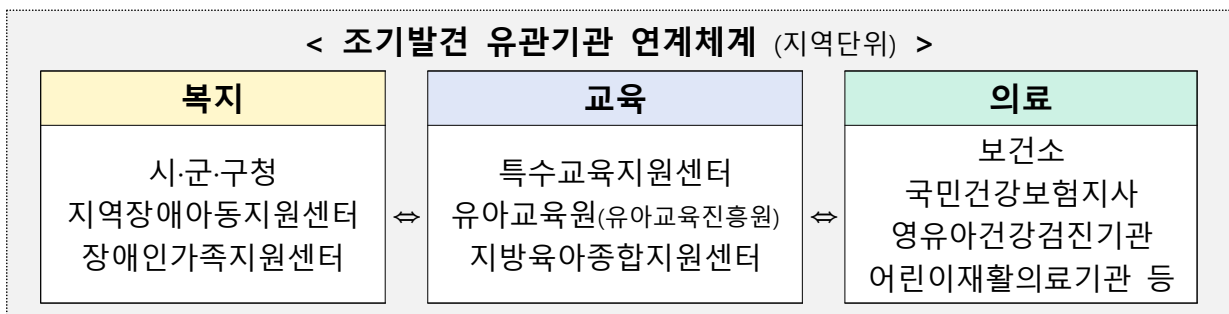
* 영유아 건강검진 연계(의료기관·보건소·주민센터), 복지지원(부모상담, 재활치료 등) 정보 제공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돌보미 지원 확대('26년1,200→'27년1,320시간)

** ('26.8월 기준) 10개소 설치·운영 및 지속 확대 추진 중

○ 장애아동의 개별 특성, 발달 수준, 환경 요인과 가족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합적 서비스 지원

○ 복지-교육-의료체계 연계*를 통해 보호자에게 신속히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및 국가 지원 안내 체계 마련

* 보건복지부(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교육부·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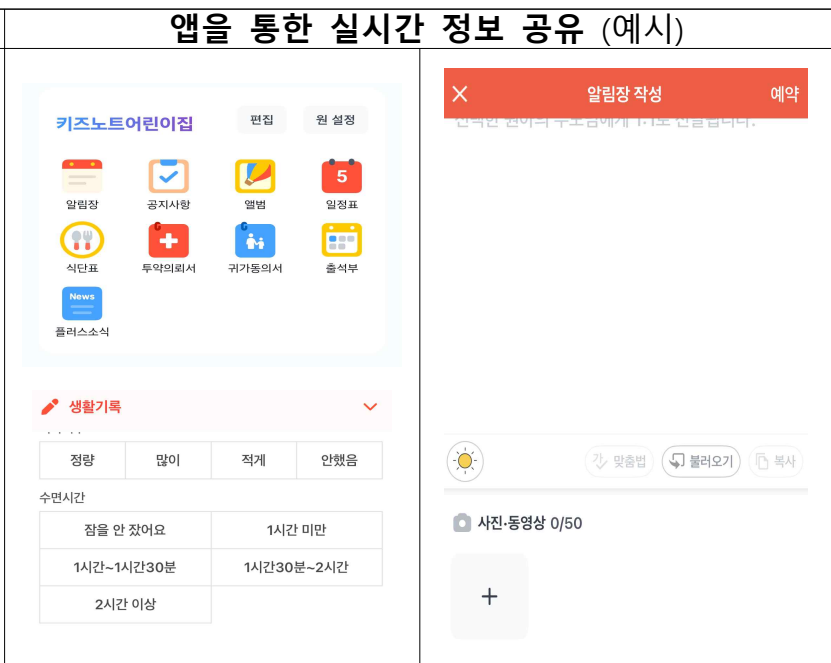
□ (지원센터 강화) 맞춤형 서비스를 끊임없이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정립 및 기능 고도화

- **(통합 사례관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고위험군 대상 원스톱 (One-stop) 복지전달체계 마련 추진
 - 당사자 및 가족의 복합적인 욕구 파악, 지역사회 자원 및 필요한 서비스와의 연계,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 수행
- **(개인별 지원)** 고위험군이 아닌 발달장애인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의 상황, 욕구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연계 지원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전문성 및 사례관리 역할 강화를 위해 처우개선 등 고용 안정화 방안 검토
- **(의료 지원)** 지역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확충 및 기능 강화, 장애인 이용편의 지원기관* 확대
 - * (장애인 이용편의 지원기관) '26년 3개 시도 5개소 → '27년 정부안 10개소 → '30년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운영
- '이용편의 지원'을 중심으로 장애인 의료사업을 다수 수행하는 기관을 (가칭)장애친화병원으로 지정 → 중등증 이상·복합질환 대응 강화
 - * '30년 8개소, 이후 시도별 1개 이상 지정·운영 목표
- **(정보 연계)**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허브(APP)를 마련하여 서비스 신청, 지역 내 기관·단체 검색, 실시간 소통 등 서비스 접근성 강화
- 발달장애인 행동중재 및 돌봄인력 지원을 위해 AI 기반 도전행동 분석 및 예측 시스템 도입 방안 검토

지금은(AS-IS)
서비스 및 기관에 대한 정보 부족
- 서비스 제공 후 일지 수기 기록 - 데이터 축적 및 관리체계 부재
가족과 제공기관 간 소통 미흡



앞으로는(TO-BE)
지역 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관 및 단체 검색 가능
서비스 제공 중 실시간 관찰·기록
데이터 기반 통계 분석을 통해 도전행동 원인 파악 및 전문적 지원 가능
보호자-제공기관-전문가 간 이용자의 상태* 및 의견 실시간 공유
* 식사, 수면, 컨디션, 투약, 도전행동 등



□ **(배상책임보험)**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확대를 위한 표준 조례안 마련 및 지자체 제정 권고 추진

*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

** 35개 기초지자체에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관련 조례 제정('26.8월 기준)

② [처우개선] 돌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처우개선

□ **(전문수당)** 신체·정신적으로 고난이도 돌봄을 제공하는 최종중 통합돌봄·긴급 돌봄 종사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전문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노력 지속

* (전문수당) '26년 월 20만원

- (보육교사^{교육부}) 장애영유아에 대한 전문적 돌봄을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 노력 지속
- (경력인정 확대) 높은 업무강도 등으로 구인난이 심각한 직종의 경우
경력인정 비율을 지자체가 10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
* ('26.7.) 사회복지시설 사업 안내 개정
- (종사자 보험 강화) 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의 위험부담 완화를 위해 '발달
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범위·수준 및 가입대상 확대 검토
* 종사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종사자·이용자 상해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보험
- (교육 강화)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심리·정서적 소진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멘토링, 자조모임, 우수사례 공유 등) 확대

③ [부모·가족] 가족의 정서적 지원 강화

- (부모교육)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자녀 진로상담 등 지원 확대
* (부모교육) '26년 1.5만명
- (부모상담) 발달장애인 부모의 과중한 돌봄 부담 경감 및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 완화를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확대
* (부모상담) '26년 1천명
- (가족휴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가족휴식지원* 대상자 확대('26년 1.6→'27년 정부안 1.8만명)
* 힐링캠프, 테마·자율여행 등 휴식 및 여가 서비스 제공
- (민간연계)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발굴 및 공적지원 연계를 위해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장애인 부모단체 등과 업무협력 추진('26.7월~)
* 보건복지부-장애인 부모단체, 발달장애인 '손잡아드림' 업무협약 체결('26.7.14.)

V. 기대효과

□ 향후 달라지는 점

전략명	추진과제	2026년	2027년(정부안)
①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연 1,200시간	연 1,320시간
	발달재활서비스	11만명	11.6만명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39개소	39+@(지정 심사 중)
	공공어린이재활병원	10개소	13개소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2,008개소	2,088개소
	특수교사	600명	873명
	방과후돌봄서비스	1.15만명	1.3만명/1인집 중 신설
	주간활동서비스	1.5만명	2만명
	최중증 통합돌봄서비스	2,340명 주간활동 단가의 180%	2,760명 주간활동 단가의 180%
	긴급돌봄서비스	36개소(최중증 2개소)	39개소(최중증 5개소)
	장애인 건강검진 운영 기관	34개소	42개소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중증장애인	심한장애인 전체로 확대
②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자립지원	800명(시범사업)	본사업 전환('27.3~)
	활동지원서비스	14.0만명	14.9만명
	장애인 의무고용률	민간 3.1%, 공공 3.8%	민간 3.3%, 공공 3.8%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192개소	194개소
	발달장애인 인턴십	647명	647명
	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	400명	720명
	발달장애인 근로지원인	11.7천명	12.2천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직무	1,327명	1,427명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직무	-	500명
	직업재활시설 훈련지원비	-	월 10만원('27.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중앙 6인, 지역 5인	중앙 7인, 지역 6인
	신진·예비 장애예술인 '첫 지원'	6억원	8억원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7.6억원	7.6억원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월 11만원	월 11만원
③ 지역사회 중심 축축한 지원체계 구축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치('26~)	17개소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례관리자	-	-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13개소	20개소
	장애인 이용편의 지원기관	5개소(3개 시·도)	10개소
	가족휴식 지원	1.6만명	1.8만명

참고

과제별 추진 일정

과제명	일정	주관부서
①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❶ (영유아) 조기진단 및 조기 지원 강화		
①-1. 영유아 건강검진 조기 진단 및 개입 강화	지속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장애인서비스과)
①-2.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확대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①-3.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확대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①-4.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 확대 및 건강보험 보상 방안 마련	'27.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장애인건강과)
①-5.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 확대	지속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❷ (아동·청소년) 방과 후 돌봄 확대 및 특수교육 강화		
①-6. 방과후돌봄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①-7. 특수학교 및 학급 신·증설 및 다양화	지속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①-8.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 강화	지속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❸ (청·장년) 의미있는 일상생활 보장		
①-9.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①-10.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27.1~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①-11. 중복장애 지원 유형 신설 및 지원방안 마련 검토	'28~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①-12. 긴급돌봄서비스 확대 및 통합운영 추진	'27~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❹ (고령) 건강관리 및 노후 생활 안정 지원		
①-13. 고령 발달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28~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①-14. 65세 이상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통합돌봄정책과)
①-15. 장애인건강검진 기관 확대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과제명	일정	주관부서
①-16.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27.7~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①-17.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	'27.7~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②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❶ (자립)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체계 구축		
②-1. 무연고 최종증 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및 주거 지원	'27.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②-2. 지역사회 자립지원 본사업 추진	'27.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②-3.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지속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②-4.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전환	'26~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대응팀)
②-5.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확대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②-6. 활동지원 대상자 확대 및 가산급여 지원 강화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❷ (일자리 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근로 지원 강화		
②-7. 장애인 일할 기회 확대(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및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지속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②-8. 발달장애인 인턴십 및 재직자 훈련 확대	지속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②-9.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 단계적 확대	지속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②-10. 맞춤형 직무개발 및 공공일자리 확대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❸ (권익지원) 지원의사결정 및 권리보호 강화		
②-11.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②-12.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②-1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확대 대응 역량 강화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학대대응팀)
②-14. 발달장애인 실질적 방어권 보장 강화	지속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실) 법무부 (보호관찰과)
②-15. 발달장애인 인식 개선	'28~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❹ (여가지원) 여가 활동을 위한 공적서비스 확대		

과제명	일정	주관부서
②-16. 특별교통수단 확대 및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지속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②-17. 장애인평생교육 강화	지속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②-18. 장애예술인 예술 및 창작 지원 확대	지속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②-19. 발달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 확대	지속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②-20.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확대	지속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과)
③ 지역사회 중심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① (전달체계) 개인별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고도화		
③-1. 시·도 장애아동지원센터 신규 설치	'26~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③-2.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정립 및 기능 고도화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③-3.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충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③-4. 발달장애인 특화 정보 허브(APP) 개발	'28~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③-5.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확대	'27~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② (처우개선) 돌봄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처우개선		
③-6. 종사자 전문수당 등 인건비 인상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③-7. 종사자 경력인정 비율 확대 검토	'26~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③-8.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종합공제 보장성 강화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③-9. 종사자 역량 강화 등 교육 확대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② (부모·가족) 가족의 정서적 지원 강화		
③-10. 발달장애인 부모 전문교육 지원 확대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③-11.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정서적 상담 지원 확대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③-12.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대상자 확대	지속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③-13. 발달장애인 위기가구 발굴 및 공적지원 연계	'26~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